

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-89호

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「농업소득의 범위」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-20호, 2026.2.2.)를 「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」으로 제명의 변경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합니다.

2026년 8월 26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)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”이란 4천700만원을 말한다.

②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(이하 “농외소득”이라 한다)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.

1.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

산업분류에 따른 “농업(01)”으로 발생하는 소득

2.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
산업분류에 따른 “임업(02)”으로 발생하는 소득

③ 제2항에 따른 농외소득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
④ 농외소득에 관한 규정은 농업인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(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